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1
----------	------

발의연월일 : 2016. 8. 12.

발의자 : 윤관석 · 민병두 · 김해영  
김정우 · 인재근 · 임종성  
박남춘 · 진선미 · 최도자  
김관영 · 윤후덕 · 황주홍  
신창현 · 김병욱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기계식주차장은 별도의 유지보수의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도 안전과 관련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관련 사고 예방 및 사후대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와 유사한 정밀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

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0, 제19조의21, 안 제19조의22, 제19조의23 신설 및 안 제29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0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기계식주차장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기계식주차장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1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2의3. 제19조의2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제19조의22를 제19조의24로 하고, 제19조의22 및 제19조의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 제2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한 자

11의3.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한 자

11의4.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 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9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 ② (생략)  <u>&lt;신 설&gt;</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기계식주차장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기계식주차장 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 -----

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 -----.
1. · 2. (생략) <u>&lt;신설&gt;</u>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u>
<u>&lt;신설&gt;</u>	<u>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u> <u>2의3. 제19조의23에 따른 기계</u>
3. · 4. (생략) ② · ③ (생략) <u>&lt;신설&gt;</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u>
	<u>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u> <u>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u> <u>결과 결합원인이 불명확하여</u> <u>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u>

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 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신 설>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점검”이라 한  
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 제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  
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  
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  
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  
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자에  
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  
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2(부기등기) (생 략)

제29조(별 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제19조의24(부기등기) (현행 제19  
조의22와 같음)

제29조(별 칙) ① -----  
-----

<p>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2. (생 략)</p> <p><u>&lt;신 설&gt;</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1의2.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12. (생 략)</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한 자</u></p> <p>② -----.</p> <p>-----.</p> <p>-----.</p> <p>1. ~ 11의2. (현행과 같음)</p> <p><u>11의3.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한 자</u></p> <p><u>11의4.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9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u></p> <p>12. (현행과 같음)</p>
---	---